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2.

인천관광공사 사장

I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26. 2. 23.(월) ~ 10. 1.(목) 18:00까지
 -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하며, 마감 기한 이후 접수 불가함.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 및 그에 준하는 기업
 - 2026.1.1.~2026.8.1.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인천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인천 중·소 관광기업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0만원(150만원x3개월)
 - (우대사항) ①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1인 기업)
 - ② 지역 취약계층(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채용 기업
 - ③ 25년 참여기업 중 해당 근로자 고용유지 중인 기업(3개사내외)
- 지원규모 : 30명 내외(1개사 1명 원칙) * 우대사항 해당 시, 최대 2명 지원
- 지급조건 :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2026.1.1.~2026.8.1.사이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고용보험 기준)

II

신청자격

1. 사업장 기준 *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관광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며 그에 준하는 기업**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록사업자*** (법인, 개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 하는 기업

** 그에 준하는 기업

- 마리나항만법(마리나업), 수상레저기구법, 항공사업법 등 관광서비스와 직접 연계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업
- 센터 운영 연계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주요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관광 유관 기업

*** 중·소기업 등록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소기업확인서' 일치 여부 확인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2026년에 정부·지자체 등의 일자리(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 예시) 2026년 인천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 선발과정 시 위 사항들을 확인하여,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거주지역 : 채용일 기준 인천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
* 신청일기준 인천 거주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제출 必
- 보험적용 : 2026. 1. 1.~2026. 8. 1.사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근로계약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인 자
 - * 2026년 최저임금 : 월 임금 2,156,880원, 주 소정 근로 40시간 기준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파견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중단

3. 우대사항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우선선발 및 최대 2명 지원)

-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1인 기업)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년 미만 기업 또는 1인 기업
- 지역 취약계층 채용 기업
 -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2025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채용 근로자 고용 유지 기업
 - 2025년 신청서상 동일 근로자 유지 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III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10. 1.(목) 18:00 * 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까지 운영
 - ※ 2026.1.1. ~ 2026.8.1. 사이 근로자 채용 완료 된 기업에 한 하여 신청 가능
 -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하며, 마감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신청 후 접수 확인
 -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tourbiz.it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공고 게시글
- 제출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4-9124
 -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형식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 접수기준

- 신청서류가 제출처(공사 이메일)에 도달한 일시가 빠른 기업 우선 접수
- 사업자 선발 조건 충족 기업 및 제출서류 완비된 기업 우선 접수
- ※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 시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신청서류
기업용	1	[서식1]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 공문 ☞ 기업체 내부 공문 양식으로 대체 가능
	2	[서식2]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3	[서식3]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서식5] 청렴이행서약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근로자용	11	[서식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2	[서식7] 근로자 지원요건 확인 및 서약서
	13	[서식8] 표준근로계약서 ☞ 기업체 내부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14	인천 거주 및 출생년월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인천 주민등록 예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기타	15	취약계층 증빙 서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예시)자립준비청년-보호종류확인서, 한부모-한부모가족 증명서, 미혼모-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PDF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 양식 미 준수 및 미 제출시 심사평가 제외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 시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가능
- 신청 마감일시 이후 접수 된 서류는 심사제외 되오니 마감일 1일 전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권장

IV 서류심사 및 선정

- 기 간 : 2026. 2. 23.(월) ~ 10. 30.(금) * 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심사항목 : [붙임1] 참여기업 선발 기준표 참고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근거 참여기업 선발 기준 조건 충족 여부 심의
- 선정방법
 - 참여기업 선발 기준상의 조건 충족 기업 선발
 -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수혜기업 선정(1개사 1명 원칙) *우대사항 해당 기업은 최대 2명 지원
 - 접수순(완비된 신청서류를 먼저 제출한 기업 순)으로 선발하되 창업초기 기업 및 지역취약계층 채용기업, 본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을 우선 선발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선발 *예산 소진시 선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추가 선정 없음
 - 지원규모(30명) 외 예비 참여기업 선발하여 조건 불충족 기업 발생 시 추가 선정 * 예비는 10순위까지 선발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안내 *신청 후 20일 이내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2026년에 정부·지자체 등의 일자리(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 예시) 2026년 인천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제외 대상으로 확인 시 최종선정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최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V 선정기업 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 신청기간 : 2026. 4. 1.(수) ~ 11. 10.(화)
- 신청대상 : 참여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
- 지원내용 : 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450만원(150만원x3개월)
- 지급조건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기준
 - 고용장려금 지원기간*(3개월) 이후 익월 1일~1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시
* 지원기간 : 2026.1.1.~2026.8.1.까지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사업참여 중도포기 시 대체 채용 지원 불가 및 장려금 미지급
- 제출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4-9124
 - ※ 이메일 신청 서류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형식 :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_기업명
- 지급방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3개월분) 고용장려금 일괄 지급
 - 신청서류 접수(공사 도달일 기준) 후 30일 이내 해당 기업의 지정계좌로 입금
☞ [예시] '26.1.1. 정규직 채용 → 3개월(1월~3월) 만근 → 4.1.~4.10. 신청 → ~5.10 이내 지급
- 신청절차

기업별 운영 (1.1.~)	고용장려금 신청 (4.1.~)	서류 심사 및 승인 (접수 후 30일이내)	고용장려금 지급 (접수 후 30일이후)
- 근로자 근속유지 (채용 후 3개월 이상) 기업	- 신청서류 제출 (3개월 만근 후) 기업⇒공사	- 신청서류 심사 - 최종 승인 통보 공사⇒기업	- 기업 지정계좌 입금 공사⇒기업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번호	신청서류
1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장려금 신청 공문
2	[서식9] 「2026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장려금 신청서
3	급여이체증(해당 근로자) *3개월 분
4	급여명세서(해당 근로자) *3개월 분
5	근로자 인천 거주 및 출생년월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인천 주민등록 예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해당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업체 통장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VI 참여자 의무준수사항(역량강화교육 참여)

- 교육목적 : 참여 근로자의 관광산업분야 전문성 함양 및 성장 지원
 - 교육기간 : 2026. 4. ~ 10.(예정) * 추후 별도 재공지 예정
 - 교육대상 : 참여 근로자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직무역량) 기획, 마케팅, 회계/세무, 영업관리, 문서작성 등
 - (디지털 융합) 챗GPT·AI 및 빅데이터 활용 관광 비즈니스 상품 기획 등
 - (관광트렌드) 관광·MICE 및 최신 관광 트렌드 등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이수방법 : 운영 교육과정 중 참여 근로자가 교육과정 선택 후 필수 이수시간 이상 교육 참여
- ※ 본 교육과정은 참여 근로자의 의무 준수 사항으로 참여 기업의 협조와 근로자의 교육 참석 필수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많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지원 제외 통보)
-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tourbiz.ito.or.kr/>)를 통해 공지함

○ 청렴이행 준수

-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을 위해 ‘청렴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 직원들은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공모·선정, 협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1	인천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및 실제 사업장 주소지)	여	부
2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관광 유관 법령의 사업의 종류 *에 해당하며 그에 준하는 기업	여	부
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여	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미 연체)	여	부
5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여	부
6	인천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을 2026.1.1.~2026.8.1.사이 채용,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	여	부
7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소비·향락업 등에 미 해당 기업	여	부
8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기업	여	부
9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	여	부
10	2026년 정부·지자체 등의 일자리(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 예시) 2026년 인천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여	부
11	지역취약계층(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인 등) 채용기업	여	부
12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1인 기업) / 취약계층 고용 기업 / 2025년 사업참여기업 중 해당 근로자 고용유지 기업	여	부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제3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여 행 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 텔 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 제 회 의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 원 시 설 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 유관 법령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행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마리나항만법(마리나업), 수상레저기구법(사장레저사업), 항공사업법(항공운송관광) 등 관광 관련 서비스와 직접 연계된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	